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민홍철 · 송재봉
양부남 · 민병덕 · 김현정
허성무 · 주철현 · 정진욱
조계원 · 이광희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,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.

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

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06호) 및 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97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」 제18조	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	2035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